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823호

나. 발 의 자 : 최민규 의원 외 40명

다.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라.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비상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시마다 상정안건 분야 위원으로 위원 변경(위촉)이 가능하므로, 안건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나.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심의·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

다. 임시위원장 선출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2항).

라.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을 삭제함(안 제14조제3항).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상설위원회로서 필요성이 감소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개요

-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은 민간이 서울시와 체결한 사회성과 계약에 따라 민간 투자금을 유치하여 공공사업을 수행한 후에 성과 목표 달성 시 민간에게 보상하는 제도임.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2014. 3. 20.)하고, 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을 추진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3억 9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제2호 청년 실업해소 프로젝트를 진행중임.

<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개요 >

구 분	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제2호 청년실업해소 프로젝트(추진중)
사업대상	만 6~16세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 아동	만 19~34세 이하 취업취약계층
사업기간	2016.8.30.~2019.8.29.(3년)	2020.11.16.~2023.11.15.(3년)
소요예산	13억원	30억원(목표 달성 인센티브 별도)

구 분	제1호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제2호 청년실업해소 프로젝트(추진중)
사업내용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그룹홈)을 통한 경계선급 지능 아동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	직무교육, 맞춤형 취업 멘토링 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사업목표	지적장애 및 경계성 지능아동 학습능력 개선	국내·외 취업자 또는 창업자 수
추진실적	최종 평가 대상 74명 중 39명 목표 달성	(사업 추진중)

- 보상사업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기관¹⁾의 부족, 객관적·정량적 성과지표 산정의 어려움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음.

다.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비상설화 (안 제13조제1항·제3항, 안 제14조제2항·제3항)

- 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면서 안건별 특별위원 추가위촉, 위원 임기, 임시위원장 선출, 회의 소집 등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 ----- ----- . <단서 삭제>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서울시 제1호와 제2호 사업의 운영기관은 동일기관인 팬임팩트코리아임.

현 행	개 정 안
<p><u>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p> <p>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호선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u></p> <p>③ <u>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u></p> <p>④ ~ ⑨ (생략)</p>	<p>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② <u>시장</u>----- ----- -. ----- <u>시장</u>----- ----- -----.</p> <p>③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p>

- 위원회는 ▶보상사업 타당성 검토 ▶운영기관 선정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보상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보상사업의 시행·관리를 위해 구성·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2022년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 ‘2023년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2023.3.31.)에 따라 비상설화²⁾를 추진함.

< 2023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계획 >

구 분		위 원 회 명
비상설 (27)	조례 개정 (17)	창업정책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DMC기획위원회, 서울마이스산업육성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 사회성과보상사업심의위원회 ,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서울형유급병가지원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위원회,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찾아가는동주민센터운영위원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 사회주택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지역상생발전위원회

2)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2022년 1년간 1회 이하 또는 3년간 3회 이하)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함.

구 분		위 원 회 명		
	법령 건의 (10)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지적재산조사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공동구협의회, 산지관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 (8)	조례 개정	희망경제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물순환시민위원회,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서울시수소산업육성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시민행복위원회,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통합 (38→8)	조례 개정	· 인권	3 → 1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어린이청소년인권위원회 → 인권위원회로 통합
		· 버스	2 → 1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마을버스정책심의위원회 → 버스정책시민위원회로 통합
		· 급식	2 → 1	·공공급식위원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 공공급식위원회로 통합
		· 성평등	3 → 1	·성평등위원회, 성별임금격차위원회,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회 → 성평등위원회로 통합
		· 노동자권익	3 → 1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위원회, 노동안전보건지문위원회 →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로 통합
		·미래사회연구	2 →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인구변화대응위원회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통합
		· 기업	2 → 1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유망중소기업인증 정책위원회 → 기업지원위원회(명칭변경, 가칭) 통합
		· 기금	21 → 1	·21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서울시 기금총괄 심의위원회(명칭변경, 가칭)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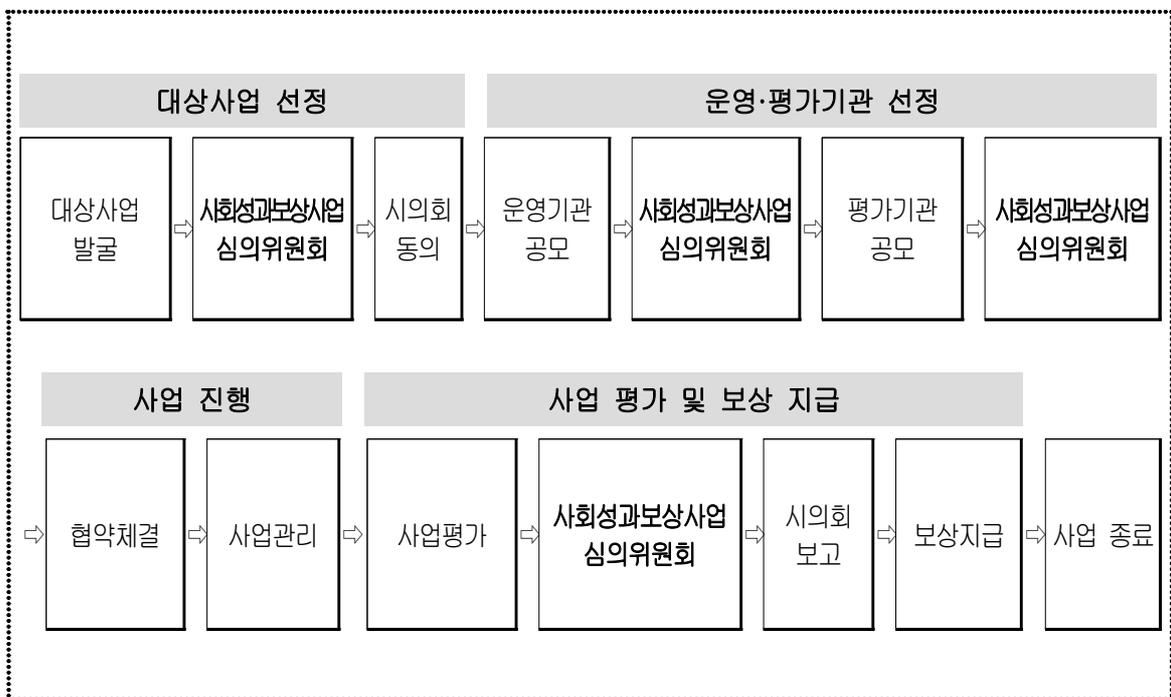
- 위원회 비상설화 결정에 따라 안전별 특별위원 추가위촉, 위원의 임기, 임시위원장 선출, 위원장의 회의 소집 등 상설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
- 현행 조례는 안전에 따라 특별위원을 3명까지 추가적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원의 임기는 3년(1차례 연임)으로, 위원장 불참 시 임시위원장 선출, 위원장의 회의 소집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례는 상설위원회로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것 외에, 정기회의 개최 등을 규정하지 않아 안전 발생 시에만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 연도별 위원회 개최실적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개최실적	2회	1회	1회	1회	3회	1회	2회	-

- 이는 다년도³⁾로 진행되는 보상사업의 성격상, 위원회의 심의는 대상 사업 선정, 운영·평가기관 선정, 사업 평가 등 사업의 초반과 종반에 집중되기 때문임.

< 보상사업 추진절차 >



- 따라서 위원회를 비상설로 변경하더라도 보상사업 논의구조가 약화 되는 등의 우려는 적은 반면, 안전에 따라 분야별 위원을 구성하여 논의의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됨.

3) 1호사업과 2호사업은 3년 주기로 진행됨.

- 다만,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사업 선정, 운영·평가기관 선정, 성과 달성 확인 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안건 발생 후에 위원을 구성할 경우 선정과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우려될 수는 있음⁴⁾.
- 한편, 제2호 청년실업해소 프로젝트가 올해 11월 종료되므로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보상사업 추진의 실효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제3호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혜진	02-2180-8057

4) 현재 발의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5.30.발의)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설로 두도록 함.